

#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5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 '19.7.1. 시행)으로 '장애등급' 이 폐지되고 '장애 정도'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,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된 자치법 규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업무혼란을 방지하고자 **일괄정비**<sup>1)</sup>추진

※ 기존 6등급 구분에서 2단계( '심한 장애' 와 '심하지 않은 장애' ) 구분으로 변경

## 2. 주요내용

가. 마하생태관광지 관람료 면제 대상 변경(안 제1조)

-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나.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계약 대상 변경 등(안 제2조)

-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 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다.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 감면 대상 변경(안 제3조)

- 종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1) 각 자치법규의 개정 취지가 같거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경우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개정절차로 인한 비경제 및 비능률성 해소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다. 관계부서 협의 : 문화관광과, 주민복지과, 환경위생과 의견수렴('19. 5. 7. ~ '19. 5. 9.)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생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)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 
및 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평창군  
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.

제6조제6호 단서 중 “1등급부터 3등급까지” 를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  
으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」의 개정)

「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」 중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장애등급이 높은” 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 으로 한다.  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” 를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 
장애인과” 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의 개정) 「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 중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2호 중 “종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” 을 “장애의 정도가  
심한” 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 1.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관람료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<u>1등급부터 3등급까지</u>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.</p> <p>7. ~ 11. (생략)</p>	<p>제6조(관람료의 면제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----- -----.</p> <p>7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

### 2. 「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우선계약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하고,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	<p>제5조(우선계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
<p>3. <u>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6조(계약자의 의무)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<u>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</u>와 지적장애인·자폐성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3.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계약자의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 <u>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3. 「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수수료 감면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<u>중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7조(수수료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</u>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

### 1. 「지방자치법」

-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2. 「장애인복지법」

- 제42조(생업 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3.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 - 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” 발췌

-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 및 취지
  - (개편 내용)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'19. 7. 1.부터 기존 '장애등급' 폐지 및 '장애정도' 기준 도입
    -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'심한 장애'(기존 1~3등급)와 '심하지 않은 장애'(기존 4~6등급)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
  - (개편 취지)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   - 장애구분을 단순화하여 서비스 제공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,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
    - ※ 기존 장애등급제도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은 의학적 장애등급을 서비스 제공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

□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필요성

-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지방세·사용료 감면 기준,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·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 인용
  -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 미개정 시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 우려 및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 실현 저해 가능성
- 행정상 혼란, 주민불편 및 제도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개정 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(‘19. 7. 1.) 전 자치법규 정비 필요

[붙임 2]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 없음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
연락처	(033) 330 - 2206